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

1.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-70호(2009.10.22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71호(2009.11.26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60호(2010.2.25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「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공사」에 대하여,
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2014년 5월 1일

서울특별시

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광진구 광장동 307-3호외12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- 1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
- 2) 사업의 명칭 :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

다.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- 1) 면적 : 4,913 m^2
- 2) 규모 : 자주식 주차장 200면(지하1~2층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- 1) 성명 : 서울특별시시장
- 2)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- 1) 당초 :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4. 4.
- 2) 변경 :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. 4.30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생략(변경없음)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(☎2133-236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